

수원지방법원 2015. 7. 22 선고 2015가단2305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5. 7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 - 가. 별지 목록 기재 1.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67.26㎡와,
 - 나. 별지 목록 기재 2.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흙벽돌조 함석지붕 사랑채 38㎡와, ②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13, 14,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적벽돌조 함석지붕 안채 96㎡와, ③ 별지 도면 표시 15, 16, 17, 18,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창고 16.2㎡와, ④ 별지 도면 표시 19, 20, 21, 22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4㎡를 각 철거하고,
 - 다.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정하정

별지